■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[별지 제26호서식] <개정 2015.5.8.>

[ ] 탐사권
공동 [ ] 채굴권 대표자 변경신고
[ ] 조광권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	처리기간 2일

신 공동 대표자	상호 또는 명칭	설립연월일
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
	주소	전화번호
		휴대전화
구 공동 대표자	상호 또는 명칭	설립연월일
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
	주소	전화번호
		휴대전화

광업권의 표시	광구소재지			
	등록번호	제 호	광종명	

변경사항	대표자 을(를) 로(으로) 변경함

「광업법 시행령」 제14조, 「광업등록령」 제50조 및 「광업등록령」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 탐사권(채굴권, 조광권)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신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구 대표자 (서명 또는 인감)

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

첨부서류	구 대표자의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 공공기 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)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(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1부

유 의 사 항
공동 탐사권자(채굴권자, 조광권자)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하여 날인합니다.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청	경유기관	처리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	협조기관
신청인	(신청서)	접 수	
		대조·확인 /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	
		결 재	
		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	
		등록통지서 발송	